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7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5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7누799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피항소인 [redacted] 주식회사

피고, 항소인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
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. 9. 28. 선고 2016구합53535 판결

변 론 종 결 2018. 10. 17.

판 결 선 고 2018. 11. 14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6. 7. 6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7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, 제1심판결문 제9면 9행부터 12행까지의 "포함되는바, … 보기는 어렵다(각주 포함)." 부분을 "포함된다.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[redacted]과 체결한 제1 내지 제3계약을 통하여 적어도 임대 창고 방식으로 제1, 2토지 및 제1, 3 창고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,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을 구 물류정책기본법 등이 정한 물류사업 중 하나인 물류시설운영업(창고업)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."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배광국

판사 김종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7

판사 송혜정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7

별지

처분내역

순번	과세대상	세목	세액(원)
1	제1 토지	취득세	611,476,440
		지방교육세	52,463,120
2	제1, 2 창고	취득세	231,352,110
		지방교육세	11,330,030
3	제2 토지	취득세	581,400,640
		지방교육세	49,394,560
4	제3 창고	취득세	112,542,100
		지방교육세	5,456,580
합계			1,655,415,580

-끝-